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19,803,979	24,594,119
일반회계	700,432,604	21,012,978
특별회계	119,371,375	3,581,141
공기업특별회계	90,702,514	2,721,075
공영개발특별회계	10,993,399	329,80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738,017	652,1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971,098	1,739,133
기타특별회계	28,668,861	860,066
의료급여특별회계	233,171	6,99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0,180	3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78,260	83,348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6,969,509	209,085
균형발전특별회계	3,300,000	99,00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806,054	24,182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090,000	152,7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52,218	13,567
수질개선특별회계	9,029,468	270,88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49,27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자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고보조금(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군비(군), 특별교부세(특), 시·군특별조정교부금(조), 군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군비 부담분(추)